국세청
www.nts.go.kr

국세청

연말정산간소화 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안내
〈 의료기관 〉

국세행정 발전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

국세청은 연말정산에 필요한 영수증을 일일이 수집해야 하는 근로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**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수집**하여 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를 통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**「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」**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
「의료법」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과 「약사법」 제2조에 따른 의약품(한약 포함)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은 소득세법 제1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6조의3에 따른 의료비 자료제출 대상으로 2019년 귀속 의료비 자료를 **2020년 1월 7일(화)까지 국세청 홈택스**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귀 기관에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면 귀 기관과 근로자 모두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**개별적으로 발급하거나 수집**하는데 따른 **시간과 비용을 절감**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.

귀 기관의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에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.

2019년 12월 일

세무서장(관인생략)

증명자료 제출 요령은 뒷면 안내 내용을 참조하시고, 자료 제출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
【☎(국번 없이)126 → ①홈택스 → ⑤연말정산 간소화】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2019년 귀속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 요령

1 제출대상기관

- 「의료법」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(진찰·치료·질병예방을 위한 비용)
- 「약사법」에 따른 의약품(한약 포함) 취급 기관(치료·요양을 위한 비용)

2 제출자료 : 본인부담금 의료비 자료

- '전체 본인부담금 의료비 자료(보험+비보험)'를 제출

  본인의 의료비 자료가 국세청에 제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 '자료제출 제외(거부) 신청'을 한 환자의 의료비 자료는 제출하지 않음

  미용·성형수술 비용 및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용은 세액공제되는 의료비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의료비 제출대상에서 제외

3 제출대상 기간 : 2019. 1. 1. ~ 2019. 12. 31.

4 자료제출 방법

- 홈택스 로그인 > 조회/발급 > 연말정산간소화 > 소득·세액공제 자료제출에서 오류검증 후 제출
  - 자세한 사항은 홈택스>자료실(자료번호 468) [연말정산간소화] 2019년 귀속 소득·세액공제자료 제출 방법을 참조(사업자 공인인증서 또는 사업자ID 로그인)

5 제출기간 : 2020. 1. 1. ~ 2020. 1. 7.까지 제출 (부득이한 경우 1.13. 20시까지 제출)

- '20.1.13.까지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**1.15.부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근로자가 조회**할 수 있습니다.
- 1.15. 이후 근로자나 세무서 담당자의 요청 등으로 자료를 수정·추가할 경우 **'20.1.15. ~ '20.1.18.까지 제출**하여야 하며(제출시간 18시~22시, 18일은 18시~20시) 근로자는 **수정·추가제출분을 1.20.부터 조회**할 수 있습니다.

6 유의사항

- 제출한 자료 중 오류건이 포함되어 이를 수정하여 제출할 경우 반드시 **오류 수정분을 포함한 전체 자료를 다시 제출**하여야 합니다.
  - (예시) 제출한 자료 100건 중 오류 10건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수정분 10건을 포함한 전체 100건을 다시 제출
- 엑셀로는 5MB이하의 경우만 가능, 그 이상은 텍스트로 변환하여 제출해야 합니다.

국세청
National Tax Service